

●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43호

2026년 6월 25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7월 21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개선권고 재결공고[동해해심 제2026-006호(모터보트 행운행복호 · 수상오토바이 꿀벌이 충돌사건)]

사 건 명 : 모터보트 행운행복호 · 수상오토바이 꿀벌이 충돌사건

피요청자 : 김**(***** ***)

대***** ** ***(***) *****)

귀하가 조종하던 모터보트 행운행복호가 2025년 6월 28일 14시 33분경,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방어리항 북방과제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117도, 거리 약 0.57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꿀벌이와 충돌한 바 있습니다.

이 충돌사건은 꿀벌이가 운항 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속력을 높여 행운행복호 진로 전방으로 크게 변침하며 횡단을 시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, 꿀벌이 좌현 앞쪽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꿀벌이와 거의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항행 중이던 행운행복호가 자기 선박 진로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온 꿀벌이를 충돌 직전ैया 발견하고 뒤늦게 피항 동작을 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래 사항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모터보트 등 빠른 속력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비해 주변 경계를 더욱 주의 깊게 하여야 합니다.

② 운항 중 주변에 다른 선박이나 기구 등이 있을 때는 필요시 충돌 회피 동작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③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는 경적을 이용하여 의문 신호나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내고, 응답이 없을 때는 미리 충돌 회피 동작을 해야 합니다.